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자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89호로 2013년 2월 21일 신홍식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대상과 설치권장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마.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에서 의무설치 대상으로 정한 장소 외에 가급적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범위를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필요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음.
- 본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장혈관질환의 갑작스런 이상 징후와 같이 미리 예측해 대비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나, 심장제세동기 설치 이후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설치장소나 사용법도 모른 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총 88대의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음.

# 참 고 자 료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2.5.14]